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찬길 의원 발의]

의안번호	2090
------	------

발의일자 : 2021. 5. 28.

발 의 자 : 박찬길 의원

찬 성 자 : 윤영희 의원

1. 제안이유

금천구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과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 및 지원 사항 규정 (안 제3조)
- 나. 국·공유시설 무상사용 (안 제4조)
- 다. 보조금 신청 및 정산사항 규정 (안 제5조)
- 라. 표창 등 사항 규정 (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2021. 5. 28. ~ 2021. 6.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금천구지회와 그 산하의 회원 단체(각 동주민센터 한국자유총연맹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이 공익이나 지역사회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표창 등)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또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이나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3조(출연·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총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1.]